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40 발의연월일: 2025. 2. 21.

발 의 자:김도읍·강승규·장동혁

박성훈 • 구자근 • 박형수

김형동 • 신동욱 • 이헌승

인요한 · 정점식 · 권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사회의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과 함께 한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함께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과관련한 콘텐츠 제작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에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 다양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는 장애인 ·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 3항제6호의3 및 제26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 다양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콘텐츠 다양성 보장을 위한 지원) 정부는 장애인·고령자· 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유 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본계획) ①・② (생 략)	제5조(기본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③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u> <신 설></u>	6의3. 장애인・고령자・다문화		
	가족 관련 콘텐츠 다양성 기		
	반조성에 관한 사항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 <신 설></u>	제26조의3(콘텐츠 다양성 보장을		
	위한 지원) 정부는 장애인・고		
	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		
	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콘텐		
	<u> 츠 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지</u>		
	<u>원을 할 수 있다.</u>		